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0. 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1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7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2014. 9.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이철호)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예탁으로 일원화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금액 규정 신설(안 제15조)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일원화 (안 제17조)
 - (현행) 공탁 또는 구금고 예탁
 - (개정) 구금고 예탁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에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함.
 - 안 제17조에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구금고로 일원화하였음.
 - 안 제52조에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¹⁾ 금액기준이 종전 ‘100만원 이상’ 체납자(3회이상)에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2013.4.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3회 이상 체납하면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간접적 수단으로써 체납징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관허사업 제한 규정의 경우 상위법령 공포일(2013. 1. 1 개정, 2013. 4. 1시행)로부터 1년 9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개정임을 감안할 때 법령개정의 시의성 제고가 요구되

1)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경신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주택건설사업허가, 주류제조 면허, 유기장영업허가, 식품접객업허가, 공장설립 신고, 체육시설업신고, 건설기계사업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 모두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음.

며, 향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의 신속한 파악 및 절차 이행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 호
----------	-------

제출연월일 : 2014.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예탁으로 일원화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금액 규정 신설(안 제15조)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나.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일원화 (안 제17조)

(현행) 공탁 또는 구금고 예탁

(개정) 구금고 예탁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불필요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8.14~9.3, 20일간)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우편법」”을 “「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방법으로”를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발송한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를 “구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를 “(징수유예 등의 처리)”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담보를”을 “납세담보의 제공을”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대하여는 재산권”을 “대해서는 재산권”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8조제5호 중 “잔여가 있는”을 “남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반사항”을 “모든사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중에 새로이”를 “중에”로 한다.

제44조 중 “제23조 및 제24조에”를 “제22조 및 제23조에”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시행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우편법 시행령</u>」 및 「<u>우편법 시행규칙</u>」 ----- -----.</p>
<p>제7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30조 <u>규정에</u>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 ----- ----- ----- ----- ----- <u>규정에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④ (생략)</p> <p>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범위</u> ----- -----.</p>
<p>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p>	<p>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 <u>방</u></p>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생략)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 ③ (생략)

법으로 송달한 경우 -----

-----.

- 발송한 우체국의 통신일부인-----

-----.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해서-----

-----.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①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7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② (생략)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

④ -----

----- 새로

-----.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 구금고-----
----- <단서 삭제>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처리) ①,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

----- 한꺼번-----

----- 한꺼번-----
-----.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납세담보의 제
공을 -----

-----.

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생략)

제26조(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 설정연월일,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생략)

② (생략)

제29조(수색) ① ~ 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 마친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

-----.

1. -----
----- 대해서는 재산
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 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구세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금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구세、가산금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 8. (생략)

④ -----
----- 대해서 -----

----- . -----
----- .

제36조(공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해서 -----

----- .

제38조(배분방법)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남
은 -----
----- .
6. ~ 8. (현행과 같음)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 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생략)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생략)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

모든사항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중에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 제22조 및 제23조에 -----

제52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위촉 해제 -----

<p><u>해충할 수 있다.</u></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u></p>
--	--